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4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최민희·김 현·문금주

박지원 • 박해철 • 복기왕

이광희 • 이기헌 • 장종태

정동영 · 정일영 · 한정애

황정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외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정원 규모로는 실질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수사처검사 수는 최대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고위공직자의 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

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1조의2).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5명"을 "300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사처 직원의 정원)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제11조에 따른 수사처 직원의 총 정원은 1,0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 략)	제8조(수사처검사) ① (현행과 같		
	음)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	②		
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			
함하여 <u>25명</u> 이내로 한다.	<u>300명</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	②		
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	<u>보한다</u> . <u><단서 삭제></u>		
<u>다</u> . <u>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u>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u>포함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	제11조(그 밖의 직원) (현행과 같		
략)	음)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삭 제></u>		
20명 이내로 한다.			
<u> <신 설></u>	제11조의2(수사처 직원의 정원)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제11조에 따른 수사처 직원		
	의 총 정원은 1,0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검		

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 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